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7828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691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재산세 40,745,990원 및 지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7

교육세 8,14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면 1행 "본사 건물(이하 '본사 건물'이라 한다) 등을"을 다음과 같이 고침

1동의 건물(바닥면적 1,164.73㎡, 이하 '본사 건물'이라 한다)을, [redacted] 토지 지상에 7동의 건물(바닥면적 합계 1,354.63㎡, 이하 '구관'이라 한다)을, [redacted] 토지 지상에 1동의 건물(바닥면적 168㎡, 이하 '설록관'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 제1심 판결문 3면 6행 "변경 처리하여"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다만, [redacted] 토지 및 [redacted]토지는 그 지상에 구관 및 설록관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건물 바닥면적의 3배 면적까지는 별도합산,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다)

○ 제1심 판결문 4면 11-13행 "① 본사 건물, …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7

사건 각 건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8면 9행 "그렇다면"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여러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면적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총 면적(9,342.5㎡)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별도합산대상 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8,062.08㎡이다)을 뺀 나머지 면적(종합합산대상 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1,280.42㎡이다)을 일률적으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할 것이 아니라(이 방법을 취하게 되면 [redacted] 토지와 같이 건물의 바닥면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부분까지 종합합산의 대상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그 지상 건물의 부속토지에 우선 포함시키고, 그래도 부속토지의 면적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이를 나머지 토지들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을 구분함이 상당하다(여러 필지 토지의 공시지가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redacted]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하였고, [redacted] 토지 및 [redacted] 토지는 그 지상 건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는 별도합산,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으므로, [redacted] 토지에 관하여 [redacted] 지상 본사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181 토지의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을 위 [redacted]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별도합산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으로 보아 이 사건 세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7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